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189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정준호·안태준·복기왕

염태영 · 양부남 · 이병진

서영석 • 이기헌 • 문진석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도시는 1983년 그리스 문화부 장관이 유럽 문화도시 사업을 제안하고, 1985년 아테네가 최초의 유럽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에서 그기원을 찾을 수 있음.

국내에서는 2000년 「도시계획법」에 '문화도시'용어가 처음 등장하고, 2004년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추진되면서 지역문화를 토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문화도시 개념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음.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 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의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지구를 지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문화도시 개념의 일반화 및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정 근

거 마련 이후, 관련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기초자 치단체 수준 혹은 그 이하 마을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하였는데,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시의 "빈집 문화공간 조성", 서귀포시의 105개 마을 내 문화센터, 악기도서관, 예래문화공간 등 총 76개의 동네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 소규모의 공간 3,658곳을 마련하거나 발굴하는 데 주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처럼 문화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변화된 정책에 맞추어 문화마을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수 있겠음.

이에 문화마을을 문화지구가 아닌 곳으로 소규모 문화시설과 문화 업종 등의 육성을 통해 마을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지정 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 설 등). 법률 제 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마을"이란 문화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의 육성, 마을 고유문화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마을의 자생 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 다.

제4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문화마을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 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2. 마을단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마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문화마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문화마을"이란 문화지구로
	<u>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u>
	소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의 육성, 마을 고유문화에 기
	반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의식
	향상과 마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u>8.</u> (생 략)	<u>9.</u> (현행 제8호와 같음)
<u><신 설></u>	제18조의2(문화마을의 지정)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u>
	<u>·시장(인구 50만 이상 대도시</u>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역문
	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u> 문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 1. 마을단위로 문화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 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 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 2. 마을단위로 특성화된 문화예술 할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거나 개최되는 지역
- 3. 그 밖에 유형·무형의 문화
 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마을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문화마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